

서울교육대학교 - (주)건영 - 더위크앤리조트

업무협력 양해각서

서울교육대학교, (주)건영, 더위크앤리조트(이하 '각 기관' 이라 한다)는 상호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양해각서는 교육문화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본원칙) 각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교육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3조 (협력분야) 각 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교육지원 사업 및 문화사업 공동 추진 및 상호 협력
2. 교육문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상호 교류
3. 교육문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상호 교류
4.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

제4조 (비밀유지)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을 본 양해각서 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.

제5조(유효기간)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각 기관의 합의에 의해서 3년씩 연장한다.

제6조(협정의 변경 및 해지)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이 해지된다.

1. 각 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법적효력) 본 양해각서는 제4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
제8조(효력발생) 각 기관은 양해각서에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양해각서의 효력은 각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9조(기타) 본 양해각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.

2020년 11월 16일

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임채성

임채성



(주)전영
회장 이형수

이형수



더위크앤리조트
대표이사 이현지

이현지